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

2027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2026. 5.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Gyeonggi Goyang Office of Education

2027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요약)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1. 대상</td><td>• 일반학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아 및 아동, 초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학생
• 특수학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아 및 아동, 초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학생</td><td>P. 6</td></tr>
<tr><td>2. 제출 서류</td><td>[한셀파일] 2027학년도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희망자 명단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선정·배치 신청 서류 점검표
[서식2-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의뢰서
[서식2-뒷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선정·배치 처리절차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서식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5] 담임교사/보호자 의견서 (희망자)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관련 보호자 확인서
[기존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 복지카드 또는 심리평가보고서 (소지자는 필수 제출)</td><td>p.15
~
p.32</td></tr>
<tr><td>3. 보호자 상담 서류 작성</td><td><table><tr><th>유치원·특수학교 입학</th><th>초등학교입학</th><th>중학교 입학</th></tr><tr><td>1순위 지원교에서 작성</td><td>소속교 또는 1근거리교에서 작성</td><td>소속교에서 작성</td></tr><tr><td colspan="3">2026. 6. 10. (수) ~ 2026. 7. 1. (수)</td></tr></table></td><td>p.6</td></tr>
<tr><td>4. 서류 제출</td><td><table><tr><th>구 분</th><th>서류 제출 시기</th><th>결과 알림</th></tr><tr><td>유치원 입학</td><td rowspan="3">2026. 6. 29. (월) ~2026. 7. 3. (금)</td><td>26. 9월 말</td></tr><tr><td>초등학교 입학</td><td>26. 11월 말</td></tr><tr><td>중학교 입학</td><td>26. 10월 말</td></tr></table></td><td>p.6</td></tr>
<tr><td>5. 행정사항</td><td>• 학구(군) 배정교: 학구도안내서비스(GIS) 이용하여 학구(군) 확인 후 작성
https://schoolzone.emac.kr/gis/gis.do
• <u>1-3지원교는 모두 '같은 시'에 위치한 학교로 작성</u>
※ 중학교 학군의 경우 학군에 해당하는 학교 중 거주지와 최근거리 학교로 기재
•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다시 받아야 하며, 미신청시 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없이 일반진학 절차에 의거 진학
• 기존 특대자 3월1일 재배치 : 동일교 내 배치유형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
• 타지역 배치 희망 : 희망 지역 지역교육청 양식으로 서류작성 후 센터 문의</td><td>p.11</td></tr>
</table>

목 차

1. 근거 1

2. 목적 1

3. 기본방향 1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2

5. 추진 절차 및 일정 5

6. 세부추진계획 6

2027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Ⅰ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3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Ⅱ 목 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입학 및 진학교 선정 및 배치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확대

Ⅲ 기본방향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및 평가는 '진단평가팀'에서 실시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여부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이든 카드 가맹기관 협력으로 무소속 학생(어린이집 재원, 가정보육 등)의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선정·배치를 위한 홍보
-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입학설명회 및 담당자 연수 운영

Ⅳ 유 · 초 · 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②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③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이 가능하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 **(ADHD, 우울증, 조현병 등은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배치 근거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 유형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중증 및 중도중복장애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업 참여가 곤란하여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따른 전일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일반학교의 복합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장애가 매우 심한 중도중복장애로 시간제 특수학급의 수업이 불가하여 전일제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학교의 순회학급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시간제로 특수학급에서 개별화 수업을 받기를 희망할 경우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을 희망할 경우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신 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기 존
(기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진단・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결정

➡

선정・배치 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 → 보호자, 학교

구 분	선정・배치	진단・평가	비고
중학교 과정 이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양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학은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하며,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제출

Ⅴ 추진 절차 및 일정

<table>
<tr><th>추진 절차</th><th>추진 사항</th><th>추진일정</th></tr>
<tr><td>1) 입학 홍보</td><td>[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유관기관 홍보
[학교] '2027학년도 유·초·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홈페이지 게시 및 전 교직원에게 홍보</td><td>5월</td></tr>
<tr><td>2) 담당자 연수</td><td>•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업무 담당자 대면 연수</td><td>5월</td></tr>
<tr><td>3) 입학 설명회</td><td>
<table>
<tr><th>시간</th><th>내용</th><th>대상</th><th>장소</th></tr>
<tr><td>10:30 ~ 12:00</td><td>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선정·배치 계획 및 서류 작성 방법 안내</td><td rowspan="2">유·초·중학교 입학 대상 보호자</td><td rowspan="2">일산동구청 2층 대강당</td></tr>
<tr><td>12:00 ~ 12:30</td><td>질의응답</td></tr>
<tr><td colspan="4">*상세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td><td>6월 9일</td></tr>
<tr><td>4) 보호자상담 서류 작성 (보호자→1근거리교)</td><td>
<table>
<tr><td>유치원· 특수학교 입학</td><td colspan="2">1순위 지원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에서 작성</td></tr>
<tr><td rowspan="2">초등학교 입학</td><td>소속교 작성</td><td>공립 유치원 재학생</td></tr>
<tr><td>학구배정교 또는 1순위 지원교 작성</td><td>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무소속</td></tr>
<tr><td>중학교 입학</td><td colspan="2">소속 초등학교에서 작성</td></tr>
</table>
</td><td>6월 10일
~
7월 1일</td></tr>
<tr><td>5) 서류 제출 (학교 → 교육청)</td><td>
<table>
<tr><th>구분</th><th>제출 기간</th><th>제출 방법</th><th>제출처</th><th>제출 서류</th></tr>
<tr><td>유
초
중</td><td>26. 6. 29.(월)~
26. 7. 3.(금)</td><td>K-에듀파인
비공개 6호 (영구)</td><td>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td><td>세부 계획 참조</td></tr>
</table>
</td><td>6월 29일
~
7월 3일</td></tr>
<tr><td>6) 진단평가 협의회</td><td>
<table>
<tr><td colspan="3">진단평가 협의회 개최 예정</td></tr>
<tr><td>유 입</td><td>초 입</td><td>중 입</td></tr>
</table>
</td><td>7월~10월</td></tr>
<tr><td>7) 특수교육 운영 위원회</td><td>
<table>
<tr><td colspan="3">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예정</td></tr>
<tr><td>유 입</td><td>초 입</td><td>중 입</td></tr>
</table>
</td><td>8월~10월</td></tr>
<tr><td>8) 결과 안내</td><td>
<table>
<tr><td colspan="3">결과 알림 – 공문 시행 예정</td></tr>
<tr><td>유 입</td><td>초 입</td><td>중 입</td></tr>
<tr><td>2026년 9월 말</td><td>2026년 11월 말</td><td>2026년 10월 말</td></tr>
<tr><td colspan="3">*소속교 및 배치교에서 보호자에게 선정·배치 결과 안내</td></tr>
</table>
</td><td>9월~11월</td></tr>
</table>

※ 2027.3.1.자 재배치 및 추가 서류 접수 기간은 P6. '서류 제출 기간 및 안내' 참고

Ⅵ 세부 추진 계획

1. 대상

가. 2027학년도 유· 초· 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

구분	대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입학	• 2023.1.1.~2021.12.31. 출생한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아	• 2023.1.1.~2021.12.31. 출생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아
초등학교 입학	• 2020.1.1.~2020.12.31. 출생하였거나 2020.1.1. 이전에 출생하여 입학을 연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 2020.1.1.~2020.12.31. 출생하였거나 2020.1.1. 이전에 출생하여 입학을 연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
중학교 입학	•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027학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	•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027학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 **'고양시 거주(예정) 학생'**이라 함은 **"2027. 3. 1. 기준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고양시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2. 서류 작성 및 제출 기간

가. 2027학년도 유·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

구분	서류 작성 기관		서류작성기간	서류제출기간	서류 보완 기간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포함)	1희망 유치원에서 작성		**2026.6.10.(수) ~ 2026.7.1.(수)**	**2026.6.29.(월) ~ 2026.7.3.(금)**	**2026.7.15.(수)까지**
초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포함)	소속교	공립 유치원 재학			**2026.9.23(수)까지**
	1희망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무소속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 포함)	소속 초등학교에서 작성				**2026.8.26.(수)까지**

*서류 작성 기간은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중 2027학년도 3월1일자 재배치를 희망하는 자

구분	1차 서류 제출 기간	2차 서류 제출 기간	비고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포함)	7월 6일(월)~ 7월 10일(금)	12월 1일(화)~12월 4일(금)	1차 접수 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2차심의(12월)에 들어감
초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포함)	9월 7일(월) ~ 9월 11일(금)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 포함)	8월 24일(월) ~ 8월 28일(금)		

3. 제출서류

가. 2027학년도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

1) 필수 제출 서류

■ [한셀파일] 2027학년도 유초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희망자 명단 **(담당교사 작성)** - [서식3] 기초조사카드에 작성한 '**기초자료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내용 요약 불가**
■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선정·배치 신청서류 점검표 **(담당교사 작성)**
■ [서식2-양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의뢰서 1부 **(전체 보호자 자필)**
■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1부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출력 후, 자필 서명 또는 인)**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호자 자필)**
■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관련 보호자 확인서 **(전체 보호자 자필)**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예 123456-1******)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

2) 거주지 관련 서류 (해당자만)

■ 거주지 이전 예정 학생 (2027년 3월 1일 이전) - 부동산 계약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서식5] 보호자 의견서, 이사 후 등본 추가 제출
■ 전 가족 등본상 등재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학교장 직인 날인된 담임 의견서 등 (※ 위장전입 방지)
■ 시설 거주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 제출

3) 기타 보충 및 증빙서류 (해당자만)

■ **1 근거리교 해당 학구 또는 최근거리교가 아닌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 **[서식5]** 보호자 의견서에 지원 이유 필수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된 학생 - 유효기한이 2027. 3. 1. 이후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1년 이내 관련 검사를 받은 학생 (유효서류: 유입 25.8월, 초입 25.10월, 중입 25. 9월 이후 검사) - 종합심리평가 결과보고서 또는 진단서 등 사본 1부
■ 시각장애 : 복지카드(시각장애 중증) 또는 교정 전후 시력 검사와 진단서 제출
■ 청각장애 : 복지카드(청각장애 중증) 또는 교정 전후 청력검사지와 언어평가보고서·진단서 제출
■ 지체장애 : 복지카드(지체장애 중증) 또는 GMFM 검사결과지와 진단서 제출
■ **건강장애** - 2026. 8. 1.이후 발급 진단서, 출결확인서(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추후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 건강상태 호전 여부와 원격수업 위탁기관(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출결 및 등교 여부 확인

나. 2027학년도 3월 1일자 재배치 희망자

1) 필수 제출 서류

- [한셀파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명단
 (반드시 한셀파일 서식에 맞게 입력 (내용 요약 불가)
- [서식8]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1부 (전체 보호자 자필)
- [서식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호자 자필)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학교 자체 양식 활용)

2) 거주지 이전 (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예 123456-1******)
- 주소지 변경 예정 학생 (2027년 3월 1일 이전)
 - 부동산 계약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서식4] 보호자 의견서, 이사 후 등본 추가 제출
- 전 가족 등본상 등재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학교장 직인 날인된 담임 의견서 등 (※ 위장전입 방지)
- 배치 통지서 및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다. 심사청구 희망자

1) 제출 서류

- [서식9] 심사청구서 양면 1부 (전체 보호자 자필)
- [서식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호자 자필)
- 기타 입증자료 (의사진단서, 학부모의견서, 학교장의견서, 기타서류)

라. 취학 유예 희망자

1) 제출 서류

- [서식10]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승인 신청서 1부 (전체 보호자 자필)
- [서식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호자 자필)
- 취학 유예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입학 연기증)

마. 선정·배치 취소 희망자

1) 제출 서류

- [서식11]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신청서 1부 (전체 보호자 자필)
- [서식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호자 자필)

4. 서류 제출 방법 및 제출처

K-에듀파인 제출 (수신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공문발송시 유의사항: 대국민공개여부 비공개 6호, 목록공개여부 예, 직원열람제한 영구

5. 유의 사항

공통	• 각급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선정·배치 계획과 보호자 입학설명회를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홍보 바람. • **선정·배치 결과 안내**: 공립학교 학생은 소속교, 사립기관과 어린이집·무소속 학생은 배치교에서 안내 • 학교 담당자는 입학 선정·배치 결과 공문을 받은 후 **내부 메일에서 배치통지서와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파일 필수 저장하여 학부모에게 직접 배부 후 수령대장 자필 서명 득** • 배치통지서와 진단평가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1부는 상급학교 진학 시 첨부 발송 • 기존특수교육대상자 중 복지카드 중증 소지자는 진단평가결과통지서 배부되지 않음 • 1차 입학 이후의 일정은 '2026 고양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됨
서류	• 신청자의 검사 결과는 **서류 보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일을 지나 제출될 경우 예정된 심의에 회부되지 못할 수 있음. - **서류보완기간: 유입- 26.7.15(수)까지 초입-26.9.23(수)까지 중입-26.8.26(수)까지** • [한셀] 서식은 담당교사가 작성하며 **학생 이름, 배치 희망교 띄어쓰기 절대 금지** • [서식1] 신청서류 점검표는 담당교사가 제출서류 일체 확인 후 작성 •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의뢰서는 **반드시 전체 보호자 자필 작성** • [서식2] 신청장애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장애 유형(특수교육법상 유형)은 보호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 후 작성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의뢰 영역과 결정된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모든 서류는 연필과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두 줄 긋고 날인 후 수정내용 기재** • 서류의 주소는 등본과 동일하게 '경기도'를 포함하여 '도로명 주소'로 작성 • **거주지 이전 예정 학생은** 이사 후 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하며 제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현장 실사 후 배치교가 변경될 수 있음 (**27. 2. 28.까지 반드시 제출**) • 복지카드의 앞, 뒷면이 한 면에 모두 나오게 복사 후 원본대조필 **(유효기간 27.3.1.이후)** • 원본 서류(입학 서식을 활용한 서류와 등본) 외 증빙서류는 복사 후, 모든 페이지에 원본대조필(교감)하여 스캔하여 제출 • 모든 서류의 원본은 제출교에서 보관 •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 첨부 파일 중 해당 학생 명단 캡쳐하여 원본대조필(교감)후 제출 • **한 명의 제출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학생당 한 개의PDF)** • **유입과 초입 또는 중입이 함께 접수된 학교는 과정별로 공문 제출** • **모든 서류는 K-에듀파인으로 제출 (수신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배치 지원 학교 작성

- **학구(군) 배정교: 학구도안내서비스(GIS) 이용하여 학구(군)을 찾아 확인 후 작성**
 https://schoolzone.emac.kr
 (①사이트접속→ ②상세주소 입력후 검색→ ③좌측 학구(군)검색결과 확인 후 기재)

※ 중학교 학군의 경우 학군에 해당하는 학교 중 **거주지와 최근거리 학교로 기재**

- **지역 간 이중지원 금지: 1~3 근거리교는 모두 '같은 시'에 위치한 학교로 작성해야함**
- 1~3 근거리교는 모두 정식명칭으로 작성 (OO초등학교, 고양AA중학교 등)
- 유치원과 특수학교 입학 희망자는 거리 상관없이 지원교 작성
- 학구(군)외의 학교를 1근거리교로 작성할 경우 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 증빙서류 (이사 예정지의 부동산서류 등) 첨부
- 지원교의 거리는 **'네이버 길찾기 도보 기준'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기재
- 복합특수학급 지원자는 반드시 배치유형에서 복합특수학급을 선택
 (복합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도 선택가능)
- 최대한 1~3 근거리교까지 작성하도록 안내

진단 검사

Ⅰ 유형 — 증빙서류 제출

복지카드 (유효기간: 27.3.1.이후)	경증: 심리평가 보고서 제출 또는 진단검사 의뢰
	중증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심리평가 보고서 · 진단서	유입 : 25.8월 이후 검사만 유효
	초입 : 25.10월 이후 검사만 유효
	중입 : 25.9월 이후 검사만 유효

Ⅱ 유형 — 협력 기관 의뢰

진단·평가 의뢰서 공문 발송
↓
거주지와 기관 일정을 고려하여 협력 기관 배정
↓
협력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연락
↓
검사 실시

Ⅲ 유형 — 병의원 검사비 지원
(최대 20만원 이내, 초과 비용 자비부담)

2027학년도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시달
↓
병의원 검사 예약 및 심리검사 실시
(26년 5월 이후 검사만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예약 전화
↓
예약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하여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1) **진단검사비 지급 신청서 <방문 작성>**
2) **진료비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3) **보호자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모두 공개)**
5) **심리평가결과보고서**
6) **진단서(건강장애에 한함)**

↓
보호자 계좌로 입금 (최대 60일 소요)

<table>
<tr><td>유치원 입학</td><td>• 특수교육대상 심의 기간 또는 선정 후, 희망 유치원 변경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보호자는 1순위 지원 유치원과 상담 후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1순위 지원 유치원에 지원 사실을 알려야함</td></tr>
<tr><td>초등학교 입학</td><td>•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연기 또는 취학유예를 신청할 경우, 소속교 또는 배치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승인이 된 경우, 취학유예가 종료되는 28년 3월 1일 기존에 배치된 학교로 입학해야함</td></tr>
<tr><td>중학교 입학</td><td>• 일반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선정배치 후 학생배치과에서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원서 작성 등 일반 진학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함
무시험배정 후 일반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선정배치를 받을 경우, 2027. 3. 1. 기준으로 전학처리(기배정 중학교→ 배치 지원 중학교)를 해야함. 해당 학생 담당교사는 고양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 관련 문의(031-900-2876)</td></tr>
<tr><td>특수학교 입학</td><td>•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지원자는 학생의 현 상황 파악을 위해 소속기관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동영상 촬영)를 실시하며, 현장실사 미동의 시 지원교 배정이 어려움</td></tr>
<tr><td>기존 특수교육 대상자</td><td>• 3월1일 재배치: 현소속교보다 거주지에서 근거리교로 재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동일교 내에서 배치 유형 변경시에만 신청 (1차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제출)
•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다시 받아야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취소로 간주
• 상급학교 진학 시 특대자 취소 예정: [한셀] 특대자 취소 예정자 탭에 명단 작성</td></tr>
<tr><td>타시군 배치 희망자</td><td>① 이사 예정 주소지의 학구배정교 확인 (지역에 따라 배치 근거 및 증빙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 ② 소속교에서 서류작성후 고양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③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전입 예정 지역의 선정 배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td></tr>
<tr><td>졸업 ▪ 검정고시 ▪ 유예 ▪ 면제 대상자</td><td>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신청 유형 및 절차</th></tr>
<tr><td rowspan="3">입학</td><td rowspan="2">(졸업, 검정고시) 특수교육 대상자</td><td>상급학교 배정 이력이 없는 경우</td><td>졸업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신규(입학) 신청 의뢰(*졸업교 학교생활기록부제출)</td></tr>
<tr><td>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td><td>합격 증명서 지참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 후 신규(입학) 신청 의뢰</td></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입학연기· 취학 유예자의 입학</td><td>1근거리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신규(입학) 신청</td></tr>
<tr><td rowspan="2">취학</td><td colspan="2">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후 면제자</td><td>소속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td></tr>
<tr><td colspan="2">(면제, 유예) *타시도군 전입하여 재취학하는 경우</td><td>특수교육대상자 유예, 면제 통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 후 재취학 신청</td></tr>
</table>
</td></tr>
</table>